

예 산 총 칙

2011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24,062,118	12,721,864
일반회계	295,603,000	8,868,090
특별회계	128,459,118	3,853,774
기타특별회계	128,459,118	3,853,774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1,102,563	33,077
주차장특별회계	35,000	1,050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1,487,945	44,638
주택사업특별회계	96,053	2,882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07,242,446	3,217,273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218,100	6,543
치수사업특별회계	1,262,790	37,884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500,000	15,000
기반시설특별회계	1,000	30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특별회계	16,513,221	495,397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 과 같다.

제 3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986,553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20,300,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경비,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은 상호 이용할 수 있다.